

IMO RSE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도의 고찰

이혜진* · †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law and system improvement about the IMO RSE Analysis

HyeJin Lee* · † Han-Seon Park

*Senior Researcher, Korea Maritime Institute, 26, Haeyang-ro 301 Beon-gil, Yeongdo, Busan, Korea

†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26, Haeyang-ro 301 Beon-gil, Yeongdo, Busan, Korea

요 약 :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인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정안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로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따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자율운항선박, IMO 규정식별작업, IMO RSE, 회원국 감사제도, 국제협약

1.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 6월, 제98차 MSC 회의에서 처음으로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공식의제가 채택되었으며 2018년 5월, 제99차 MSC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할 경우 영향을 미칠 해사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14개의 국제협약에 대한 규정식별(RSE; Regulatory Scoping Exercise)작업에 착수하기로 회원국 간 협의를 하였다. 규정식별작업은 현재의 협약체계 내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을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제107차 LEG에서도 자율운항선박 RSE 최종 검토 작업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2020년) 11월 말로 연기 되었다.

…… (중략) ……

수용 시 국제협약이 일부 섞여 있다. 국제협약의 경우 공법적 성향의 규정으로 규제법이며 절차법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약의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MO에서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협약이 개정되고 발효된다고 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이 공포하여 수용을 하는 법률 제정이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사공법 법제의 경우 IMO 협약에 대응하여 이를 수용한 국내법 법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2. 국내법 수용

2.1 국내법 수용 문제

국제해사기구는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협약 제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정을 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약 중 SOLAS, STCW 등을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등에 수용하였고, 국내법

2.2 IMO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

<표> IMO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 법제

IMO 협약	국내법 수용
SOLAS	선박안전법
LL	선박안전법
CSC	선박안전법
TONNAGE	선박법
STCW	선박직원법, 선원법
COLEG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법률
MARPOL	해양환경관리법
CLC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FUND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SAR	수난구조법
INMARSAT	전파법
SUA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BWM	선박평형수 관리법
MLC	선원법
...	...

또한 IMO에서는 7년 주기로 IMO가 제정한 각 종 협약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체약국들이 해당 협약을 어느정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감사기준은 IMO 협약 이행 코드이며, 동 코드의 회원국 의무사항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IMSAS 감사대상 협약은 해상인명안전 협약 등 6개의 협약과 동 협약에 수반된 23개의 코드이다.

회원국 감사 제도에서 부적합 평가 시 IMO A그룹 이사국 지위 유지 및 국가의 해사안전관리 등급 결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국적선의 항만국통제 강화로 인한 선박운항 지연, 입항거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또한 끼치기에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IMO 협약이 개정된다면, 개정 내용에 따라 국내법 수용이 필요하다.

..... (중략)

3. 국제협약

IMO MSC, LEG에서는 각 협약에 대한 작업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RSE작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 자율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주체의 역할, 책임, 의무 등 기존의 주체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략)

4. 검토해야 할 Factor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른 RSE 작업에 따라 향후 제개정 되어야 할 주요 법령은 약 25개 정도로 식별할 수 있다. 자율성, 국제성, 인적사항, 적용가능성 등 검토해야할 주요 Factor에 따라 국내법을 분류해보았다..... (중략)

5. 결 론

IMO 협약 제개정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주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발전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선제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식별된 규제에 대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우리 정책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략)

참 고 문 헌

- [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18), 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20), 자율운항선박과 변화의 물결